

# 정 관(定款)

사단법인 국제미용문화교류협회

제정 : 2020.08.30.  
개정 : 2022.04.02.  
개정 : 2024.06.18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국제미용문화교류협회”(이하 “국미문교협”이라 한다)라 하며, 영문표기는 “International Beauty Culture Exchange Association”로 약칭은 “IBCEA”라 한다.

### 제2조(목적)

이 법인은 민간차원의 미용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미용 관련 정책과 제도발전 연구,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, 전문인력 양성과 미용 관련 인식개선 및 봉사와 후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** 본회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필요에 따라 국내·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

### 제4조(목적사업)

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미용 관련 정책과 제도 발전연구 사업 및 세미나, 학술연구, 포럼 개최
2. 미용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 및 문화예술 교류 행사
3. 미용 관련 인식개선 및 봉사과 후원사업
4. 산업체, 학교,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전문인력양성사업
5.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그 밖의 사업

② 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
### 제5조(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)

① 이 법인이 제4조 제①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.

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 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
## 제2장 회 원

### 제6조(회원의 자격)

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
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① 회원의 자격,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1. 정회원 : 정회원은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

㉠ 이 법인의 취지를 지지하고 전직 공무원, 일반인 및 장애인분야 관련업 실무 경력자

㉡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내·외국인으로 회비를 납부한 자

2. 평생회원 : 평생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3. 일반회원 : 장애인 예술문화에 관심이 있는 자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회원이 되고자 한 자
4. 특별회원 : 본 법인의 발전을 기여하는 국내·외 장애인 문화, 체육, 예술 관련 기관, 사업체와 단체로 찬조금, 후원금, 기부금을 납부한 개인, 기업, 단체장으로 이 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

#### **제7조(회원의 권리)**

- ① 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- ③ 회원의 권리를 갖기 위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6개월 이상 연속 체 납시 휴면회원으로 전환하고 권리를 갖지 못한다.
- ④ 회원은 본 법인에서 개최하는 세미나, 포럼, 학술행사 등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- ⑤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와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. 다만, 정회원 이상 총회의 의결권, 임원의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진다.

#### **제8조(회원의 의무)**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- ①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- ②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
-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
#### **제9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**

-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(또는 이사회 의결)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-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회비에 대해 서는 반환하지 아니하나, 납부회비의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한다.
- ④ 회원의 자격정지 등 징계의 사유에 해당되는 시점부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.

### **제3장 임 원**

#### **제10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**

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① 이사장 1인
- ② 상임이사 1인
- ③ 이사는 5 ~ 15이하로(상임이사를 포함) 한다.

④ 감사 2인

#### 제11조(임원의 선임)

① 이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
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 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
②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임원의 해임)**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 임할 수 있다.

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
①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
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**제13조(임원의 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②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#### 제14조(상임이사)

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
②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
#### 제15조(임원의 임기)

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선임원 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

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#### 제16조(회장 및 이사의 직무)

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.

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 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**제17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**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상임이사 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#### 제18조(감사의 직무)

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
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
② 총회 및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
① 제1호 및 제2호 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

② 제3호 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

소집을 요구하는 일

- ①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

## 제4장 총회

**제19조(총회의 구성)** 총회는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
**제20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**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②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 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21조(총회소집의 특례)**

-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2. 제17조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3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①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.

**제22조(총회의 의결사항)**
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의결한다.

-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
- ①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
- ②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
-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④ 사업계획의 승인
- ① 이사회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⑦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

**제23조(회원의 결의권)**

- ① 회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.
- 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**1) 제24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**

- ① 총회는 의결권이 있는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- ①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 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**제25조(의결제척사유)**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-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①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## 2) 제5장 이사회

**제26조(이사회 구성)** 이사회는 이사(이사장, 상임이사를 포함)로 구성한다.

### **제27조(이사회 소집)**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- ①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-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28조(이사회 의결사항)**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- ①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- ② 예산,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 - ③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- ④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 - ⑤ 총회에 부치는 안건의 작성
  - ⑥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- ⑦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① 그 밖의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29조(의결정족수)**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
### **제30조(서면결의 금지)**

이사회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### **제31조(서면결의)**

-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치는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①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## 제6장 재산과 회계

### **제32조(재산의 구분)**

-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- ①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

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.

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### 제33조(재산의 관리)

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 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### 제34조(재원)

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1. 회비
2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
3. 각종 기부금, 후원금, 찬조금
4.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5. 기타

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5조(회계연도)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### 3) 제36조(예산편성 및 결산)

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 다만,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
제37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8조(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) 법인은 제3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
- ②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
- ①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
- ④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 보고서

제39조(임원의 보수)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40조(잉여금 처리)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적립금 또는 기본 재산을 편입하여야 한다.

### 4) 제41조(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)

① 이 법인은 적법절차에 의거 모집한 기부금에 대해 그 금액 및 자금사용 실적을 홈페이지와 문서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① 기부금에 대한 적법절차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## 제7장 사무부서

### 제42조(사무국)

-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## 제8장 보 칙

**제43조(정관변경)**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- ①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
- ② 정관변경 사유서 1부
- ③ 개정될 정관(신·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) 1부
- ④ 정관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회의록 사본 1부
- ①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, 처분재산의 목록, 처분 방법 등을 작성한 서류 1부

### 제44조(해산)

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45조(잔여재산의 처리)**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
**제46조(청산종결의 신고)**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 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.

**제47조(준용규정)**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**제48조(규칙제정)**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제2조(경과조치)

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**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** 본회를 설립하기 위해 이 정관을 작성하고  
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